

- 3) 휴직의 횟수: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,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마. 휴직신청서류

1) 휴직신청서

- 가) 소속, 직, 성명, 돌봄필요성, 휴직필요성, 돌봄계획, 휴직기간 등을 명시
- 나) 돌봄 필요성: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/ 배우자 부모 포함
- 다) 휴직 필요성: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- 조부모, 손자녀 돌봄 사유: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,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4)
- 라) 돌봄 계획: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 (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)

2) 휴직 사유 입증서류

- 가) 가족관계증명서(돌봄 및 부양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)
- 나) 주민등록등본(동일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)
- 다)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라)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,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3) 가족돌봄휴직 승인 시 고려사항

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, ①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②휴직기간 동안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

- 가)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
- 나)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·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-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,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
- 다)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,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
 -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'부양'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.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, 금전적 지원이 직무 수행을 중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 하지는 않음